

국가철도공단

수신자 박영현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						
당사자	성명(명칭)	박영현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89번길 16-14(오정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귀 박영현은 2025년도에 국유재산(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0-78번지) 내 불법 시설물 (판넬지붕 단층 건물 등 일체)을 소유자인 김선하로부터 매입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 국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판넬지붕 단층 건물 등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2026년 9월 4일까지 완전하게 철거 및 반출하고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귀하(박영현)로부터 징수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조문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조문내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 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기관명	국가철도공단	부서명	총청본부 재산운영부	담당자	윤여종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전화번호	042-607-5084
		전자우편 주소	yechon25@kr.or.kr			팩스번호	042-607-5250
		제출기한		2026년 9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가 철 도 공 단 이



붙임 1

위 치 도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78



붙임 2

대상지별 철거내역

연번	소재지	불법 시설물 내역	면적 (㎡)	비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78	판넬지붕 단층 건물 등 일체	75	

붙임 3

현장사진

